

의안번호	2209206
의 퇴 인	조정훈 의원
회 답 일	2025.06.30.
추 계 번호	25C1725

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①국가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②인재양성전략회의와 ③그 지원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3,500만원, 2030년 3억 5,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8억 4,700만원(연평균 3억 6,900만원)으로 추계
-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	34	—	—	—	—	34	6.8
인재양성전략회의(안 제 11조)	8	8	8	8	8	40	8
지원본부 설치·운영(안 제15조)	393	341	344	346	349	1,773	355
합 계	435	349	352	354	357	1,847	369

주: 1.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2.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국가 등의 책무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	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양성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	
2	안 제6조 (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등의 수립)	(제1항)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라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6조 (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등의 수립)	(제2항)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1조에 따른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3	안 제7조 (시·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 등)	(제1항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시·도 지방시대 계획 및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과 연계하여 매년 해당 시·도의 인재양성업무에 관한 계획(이하 “시·도 인재양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4	안 제11조 (인재양성전략회의)	(제1항)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전략회의(이하 “전략회의”라 한다)를 둔다.	의무규정
5	안 제15조 (전략회의 지원본부)	(제1항) 전략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재양성과 관련한 부처 간 협업 및 인재양성정책의 수립·조정·점검·지원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재양성전략회의 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	의무규정
6	안 제17조 (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영향분석)	(제1항) 전략회의는 다음 각 호의 인재양성정책이 경제, 사회, 문화,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·분석할 수 있다. 1.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재양성정책 2.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인재양성정책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재양성정책	재량규정
7	안 제19조 (지역인재양성정책의 추진)	(제1항) 시·도지사는 시·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 인재양성협의회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2조의 2제1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는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8	안 제21조 (조사·분석 등)	(제1항)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인재양성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사·분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활용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. 1. 인재양성의 투자·성과,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지표의 개발 및 측정 등에 관한 사항 2. 인재양성기관의 인력배출 규모 및 취업현황·추세 등에 관한 사항 3. 산업별·지역별·분야별 인력수요 및 공급 현황과 중·장기 전망에 관한 사항 4.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·연구·훈련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5. 인재의 국제 이동 및 인재양성 관련 국제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 6. 인재양성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경제, 산업, 기술, 교육, 복지 동향 등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인재양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의 조사·분석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		(제4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, 시행계획 또는 지역 인재양성에 관한 실태를 조사·분석하거나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	재량규정
9	안 제23조 (인재양성지원센터의 지정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재양성지원센터(이하 “인재양성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4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재양성지원센터 및 시·도 인재양성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
10	안 제24조 (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인재양성지원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, 인재양성기관, 그 밖의 법인·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3항)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,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0	안 제24조 (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)	(제4항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지역의 행정 기관과 지역 내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, 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11	안 제25조 (인재양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)	(제1항)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재양성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양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12	안 제26조 (민간기관 등과의 지원 및 협력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양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재양성기관, 관련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 (국가 등의 책무)	×	·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재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·홍보할 의무를 규정함 ·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
2	안 제6조 (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등의 수립)	○	
3	안 제7조 (시·도 인재양성계획의 수립 등)	○	
4	안 제11조 (인재양성 전략회의)	○	
5	안 제15조 (전략회의 지원본부)	○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6	안 제17조 (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영향분석)	×	· 제정안은 특정 인재양성정책이 경제·사회·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·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함 · 제정안에 따라 인재양성전략회의의 조사·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, 현시점에서 조사·분석 대상이 되는 인재양성정책 및 제반비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산출이 곤란함
7	안 제19조 (지역인재양성정책의 추진)	×	· 제정안은 시·도 인재양성계획과 관련된 심의를 위해 시·도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· 시·도 인재양성협의회 설치·운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해당 협의회의 설치가 시·도지사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는 점, 타법에 근거한 위원회 등으로 동 협의회를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산출하기 어려움 · 참고로,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2조의2에 근거해 각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
8	안 제21조 (조사·분석 등)	×	· 제정안은 정부가 인재양성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사·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· 제정안에 따른 조사·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조사·분석의 대상 및 범위, 제반 비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산출이 곤란함
9	안 제23조 (인재양성지원센터의 지정)	×	·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인재양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센터에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· 제정안에 따라 인재양성지원센터에 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산출이 곤란함
10	안 제24조 (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)	×	· 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재양성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망을 구축하고,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· 제정안에 따라 협력망이 구축되고, 경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산출이 곤란함 · 참고로, 제정안 부칙은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을 폐지하면서 이에 근거해 구축된 협력망을 제정안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보고 있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1	안 제25조 (인재양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)	×	· 제정안은 인재양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· 현행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운영 예산으로 '25년 10억원을 편성함 · 제정안 부칙은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을 폐지하고, 동법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을 인재양성 우수기관으로 간주함 ·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가 인재양성 우수기관 인증제로 개편되어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지출이나, 사업확대 여부 및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
12	안 제26조 (민간기관 등과의 지원 및 협력)	×	·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재양성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· 제정안에 따라 경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산출이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, 본 추계서에서는 ①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, ②인재양성전략회의 설치·운영(안 제11조), ④인재양성전략회의 지원본부 설치·운영(안 제15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- (안 제6조)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지출되며, 교육부의 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－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함
 - －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, 자료 제작,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
 - －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부터 연구용역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
 - (안 제11조) 인재양성전략회의(이하 “전략회의”) 설치·운영 비용은 위촉위원 수에 참석 수당과 회의 횟수를 곱하여 추계하며, 「인적자원개발 기본

법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참조함

- 제정안은 전략회의에 실무조정회의나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성 규모나 위원 정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-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참조함¹⁾
- 참고로, 현재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이 정지된 상태이며, 정부는 '23년부터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제정안과 동일 명칭의 회의를 운영 중임

○ (안 제15조) 전략회의 지원본부 설치·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추계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의 조직 구성을 참조함

- 전략회의 지원본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과 유사하게 파견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가정
-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,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의 합계로 하며, 인건비의 경우 파견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구분해 추계
- 참고로,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은 고위공무원 1명, 4급 4명, 5급 4명, 7급 1명 전문임기제 나급 1명으로 구성됨

□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 및 시·도계획 수립(안 제6조 및 제7조)

□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의 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,400만원으로 추계

1)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

제7조(국가인적자원위원회) ①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[표 2] 교육부의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연구주제	소관	사업연도	연구용역비
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(안) 마련을 위한 연구	교육부	2020	40
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	교육부	2020	30
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	교육부	2021	30
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(2023-2027)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	교육부	2021	36

자료: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

[표 3] 계획 수립 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	34	-	-	-	-	34	6.8

주: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인재양성전략회의 설치·운영(안 제11조)

□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위촉위원 수에 참석 수당과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하며,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4,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

- (위촉위원 수) 제정안 및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의 규정을 참조하여 위원회 정원 30명 중 위촉위원은 16명이라 가정
 - 안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략회의의 정원은 30명으로 하고,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당연직위원의 수는 14명으로 함²⁾
- (참석 수당)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을 참조하여 25만원으로 하되,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

2)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

제7조(국가인적자원위원회) 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
 2.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 3.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」
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”이란 기획재정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국방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·중소벤처기업부장관·국무조정실장·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.

-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은 1일당 15만원내로 하고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만원내로 편성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동 규정은 최근 5년간 개정된 바 없음
- 한편, 동 지침은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원격지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 등을 별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(회의 횟수) 동명의 회의 실적을 참조하여 연 2회로 가정
 - 정부는 '23년부터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제정안과 동일 명칭인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운영 중이며 회의는 '23년 2회, '24년 1회, '25년 1회 개최됨³⁾

[표 4] 인재양성전략회의 설치·운영 비용 추계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위촉위원 수(A, 명)	16	16	16	16	16	-	-
참석 수당(B, 만원)	25	25	25	25	25	-	-
회의 횟수(C, 회)	2	2	2	2	2	-	-
추가재정소요 (D=A×B×C, 백만원)	8	8	8	8	8	40	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전략회의 지원본부 설치·운영(안 제15조)

□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의 조직 구성을 참조하여 산출하며,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6,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

-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,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의 합계로 하며, 인건비의 경우 파견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구분해 추계
 - 파견공무원은 원소속기관이 존재하므로 임금, 수당 및 기관부담금의 인건비 항목 중 파견수당만을 추가재정소요로 가정

(1) 인건비

- 인건비는 임금, 수당 및 기관부담금으로 구성됨
 - 임금과 수당은 대상자 수에 1인당 임금 및 수당을 곱하여 산출
 - 기관부담금은 임금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

3) 교육부, 「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」 (2023.2.1).
교육부, 「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」 (2025.3.19).

를 곱하여 산출

- (지원본부 인원)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의 조직 구성을 참조하여 고위공무원 1명, 4급 4명, 5급 4명, 7급 1명, 전문임기제 나급 1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
- (임금)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3 제7조 나목에 따른 전문임기제 나급의 연봉액을 참조하여 산출
 - 추계기간 동안 매년 최근 3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
 - 파견공무원의 임금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- (수당) 직급보조비, 급식비,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으로 구성되며 「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」을 참조하여 산출
 - 파견공무원은 파견수당만을 추가재정소요로 함
- (기관부담금)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합으로 하며, 임금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
 - 파견공무원의 기관부담금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(2)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

- (기본경비) 지원본부의 인원수에 1인당 기본경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
 - 기본경비 단가는 '25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의 1인당 기본경비 예산액을 준용하고,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
- (자산취득비) 지원본부를 신설하는 2026년에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며, 지원본부의 인원수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를 곱하여 산출

(3) 추계결과

-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9,300만원, 2030년 3억 4,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7억 7,3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지원본부 설치·운영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인건비	96	97	98	100	101	493	99
기본경비	242	244	245	246	248	1,225	245
자산취득비	55	—	—	—	—	55	11
합 계	393	341	344	346	349	1,773	355

주: 1.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2.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